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NASC 기획재정부위탁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회계기준센터
| 위탁운영 | 한국공인회계사회

C o n t e n t s

제 1 장 >>		
발생주의 회계제도 소개	03	
제 2 장 >>		
국가 회계제도 소개	13	
제 3 장 >>		
재무제표 소개	23	
제 4 장 >>		
주요계정과목 소개	37	
01절 _ 재정상태표	38	
02절 _ 재정운영표	50	
03절 _ 자산·부채의 평가	56	
제 5 장 >>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67	
별 첨 >>		
재무제표 서식	77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제 1 장

발생주의 회계제도 소개

1. 국가회계기준이란?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복식 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집니다.

2. 발생주의란?

-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기록 방식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 구매 시 거래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을 현금으로 갚을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발생주의는 보통 현금주의 보다 거래의 기록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는 향후 자산·부채의 변동이 있을 것이 확실할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를 보다 빠른 시점에 기록하게 되겠죠?

< 그림 1-1 >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3. 복식부기란?

- 복식부기란 거래 발생 시 동시에 기록을 두번(차변과 대변)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기록 방식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는 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결과 자산(자동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록하게 되지만, 단식부기는 현금 지출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복식부기는 자산을 명칭별로 분류하고 기록하므로 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의 경우에는 자산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 한 현금출납기록을 일일이 파악하여 자산 현황을 다시 산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양쪽으로 기록합니다. 사례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했으니 현금을 지출했다는 기록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 그림 1-2 〉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4. 발생주의 · 복식부기 도입 기대효과

(1)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 종전의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로 전체 국가자산 · 부채 규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 예를 들어 “국가자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 유형별(국유재산, 물품, 채권)로 금액을 파악하여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관련 금액이 기록된 보고서들이 복식부기 방식처럼 거래 발생 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장부로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 ·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재정상태표에서 자산종류별로 금액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국가자산 · 부채 규모 등 국가재정의 전체 모습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개별 보고서에서 관리하던 자산 · 부채 내용 및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3 > 재무제표 도입효과 -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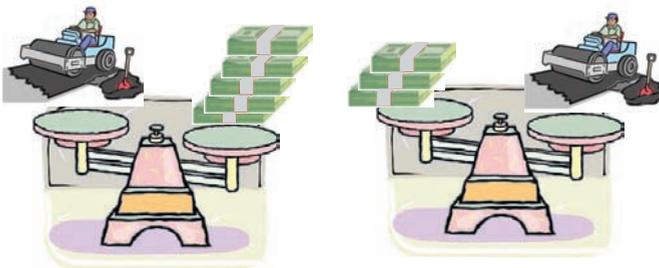
(2)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연말이 가까워 지면 도로나 보도 블록 교체공사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유는 승인 받은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다음 해에 그 만큼 예산 배정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예산 계획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예산을 잘 편성 했으면 예산이 남지 않았을 것이고 이 경우 다른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에서 연말에는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단순히 승인된 예산을 100% 집행했느냐로 평가받게 아니라 재정운영표의 원가와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바로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평가되는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했느냐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 집행으로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고, 단순히 예산 배정액을 소진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그림 1-4 > 재무제표 도입효과 -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재무제표 도입 전

재무제표 도입 후

(3)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종전의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계약에 의한 국가채무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채무의 예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인데 모두 계약에 따라 향후 재정지출이 확정된 채무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관심 있게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상환스케줄 일정에 맞추어 재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런 채무만을 관리하다보면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회계용어로는 충당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잠재부채의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있는데 종전 방식에서는 산출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출 규모 결정 시 충당부채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반면,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계상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규모나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향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여 이를 기초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림 1-5 > 재무제표 도입효과 - 국가재정 건전성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국가자산에 대한 자원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 종전의 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증인자산을 대부분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결산에서는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자산관리체계에서는 국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산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건설증인자산도 투입된 자원의 가치만큼 자산으로 기록하여 관리가 강화되며, 도로·하천·댐·공항·항만·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산들은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현재 자산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과거에는 건설비 지출 연도에만 건설비 지출액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보고가 되었지만 발생주의 회계 도입 이후에는 건설 이후에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며, 도난 및 파괴 등으로 자산에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해당 손실이 기록됩니다.

〈 그림 1-6 〉 제표 도입효과 - 국가자산에 대한 자원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5.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국가 현황

-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재정적자 누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뉴질랜드와 영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동안 이익창출을 위한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기업의 회계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이미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15개국)하였으며, 기타 국가들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일본은 의회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생주의 회계제도 채택국가(15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03회계연도부터 현금주의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기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12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발생주의 도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재정건전성을 통한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되어 주요 국가에서 이미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90년대 부터 재정적자 누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표 1-1 〉 세계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중앙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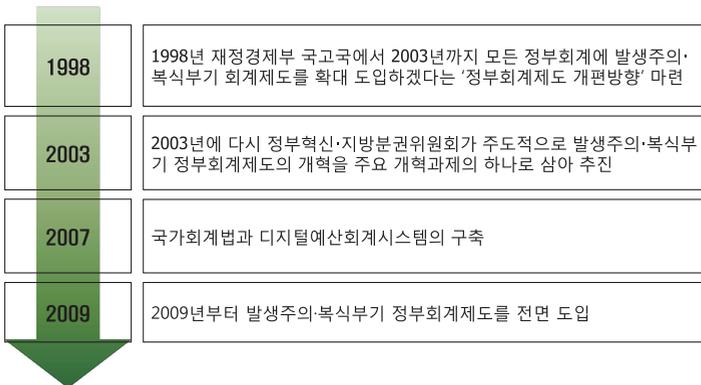
국가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도입연도	1993	1993	1994	1998	2002	2003	2005	2006

자료 : Andy Wynne "Accrual accounting for the public sector-A Fad that has had its day" *International Journal of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2008

6.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경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5월 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의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 이후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2003년까지 모든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정부회계제도 개편방향’이 마련되어 진행되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제도의 정비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등에 예상 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2003년 도입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2003년에 다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하게 되었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감사원 등 범(凡)정부적 노력을 통해 국가회계법(2007년)의 제정, 국가회계기준의 마련(2009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2007년)등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림 1-7 〉 발생주의 도입 경과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3~2006년 시범운영을 통해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하고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표 1-2 〉 공공부문별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구 분	현 황
국 가	-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 2년간 시범운영기간 (2009-2010) - 2011회계연도 국가통합재무제표 국회 제출 예정
지방자치단체	- 2003~2006년 시범운영 -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전면 시행 -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첨부하여 지방의회제출
공공기관	- IFRS 도입 (공기업은 2011년 도입, 준정부기관은 2013년 도입계획) -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제 2 장

국가 회계제도 소개

1. 발생주의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체계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서의 국가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근거법이며,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일부 회계처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준칙, 재무제표 계정과목별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사항별 회계처리지침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림 2-1 〉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2.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과의 관계

- 국가결산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각각의 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재정운영의 일반원칙 및 예산편성·예산집행·성과관리·결산·국가채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산과 관련해서는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법은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국가회계법은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법으로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표 2-1 〉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 결산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국가재정법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 중앙관서결산보고서 → 국가결산보고서 → 감사원검사 → 국회제출 (2월말) (4월10일) (5월20일) (5월31일) *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에 명시
국가회계법	- 결산보고서의 구성·내용, 작성방법 등을 규정

3.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 됩니다.
- 세입세출 결산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대비 실제 집행 결과를 비교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전부터 작성하여 왔습니다.
- 세입세출결산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결산서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제도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예산 대비 사용 실적을 비교하는 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과보고서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 사전에 정한 성과목표 대비 달성한 실적을 비교하여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표 2-2 〉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구성서류	작성방법
결산 개요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세입세출결산 (기금은 수입지출결산)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4.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별로 부속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국가채무관리 보고서, 국가채권 현재액 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4가지 부속서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전부터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도 회계연도말(12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승인된 예산을 지출하여 비품을 사고, 건물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재산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관리하는 보고서가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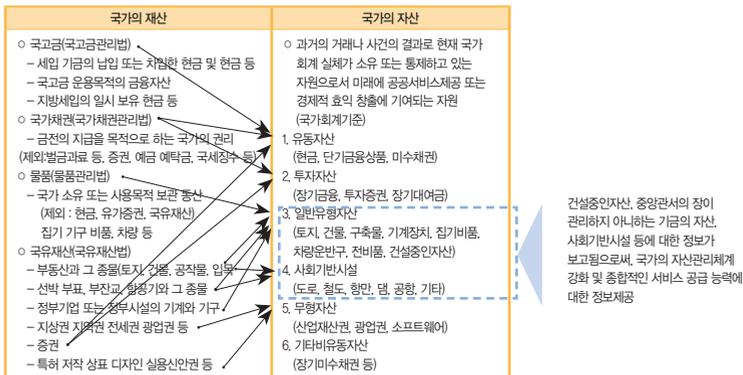
〈 표 2-3 〉 결산보고서별 부속서류 종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서	계속비 결산명세서,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이월명세서,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성인지결산서, 예비금 사용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재원조성실적표, 기타서류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통합재정수지표,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재무제표	국가채무관리 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5. 재산vs자산, 채무vs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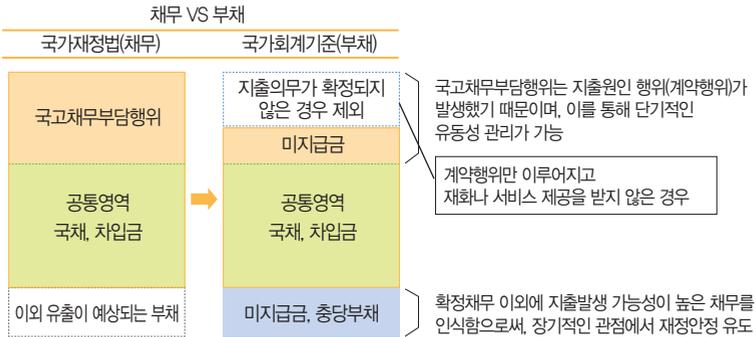
- 앞서 설명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는 국가소유 재산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 ‘국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보고서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등기하고 있는 자산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런 보고서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른 일부 자산(건설중인자산, 미수이자 등)이 누락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 국가 전체 자산 파악이 어려웠으며 신뢰성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
- 또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산으로 보지 않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국가회계 도입으로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게 되고, 자산 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게 됩니다.

〈 그림 2-2 〉 財産 vs 資産



- 또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왔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향후 국고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향후 현금지출 예상액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채무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채무는 계약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거래로서 발생주의에서 말하는 부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주의 정보에는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간경과성 부채나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총당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그림 2-3 〉 債務 vs 負債



6.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적용대상은?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국가회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모든 회계(일반·특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일반회계란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회계입니다. 우리나라의 49개 정부부처별로 하나의 일반회계와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림 2-4 〉 정부조직도



- 또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총 64개의 기금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도 상 정부부처 이외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특임장관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회계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됩니다.

7.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1)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간 회계제도의 연계에 대해 심의합니다.

(2) 국가회계기준센터

- 국가회계기준센터(<http://www.nasc.or.kr>)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26일 설립되었으며,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은 센터소장 및 3개 팀(국가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회계기준팀은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석과 질의회신 수행 및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의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평가분석팀은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개발 및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국제협력팀은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분석 및 해외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제 3 장

재무제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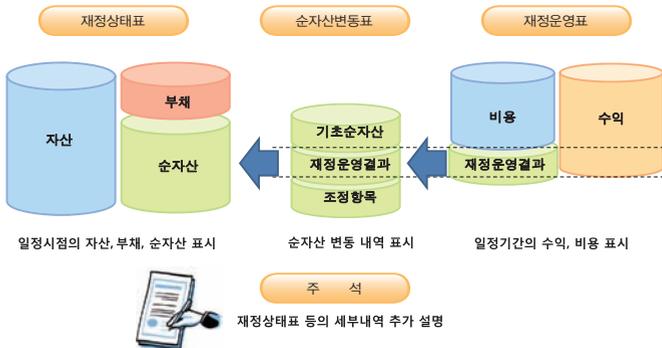
1. 재무제표의 종류는?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합니다. 재정상태표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정상태의 악화여부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정운영표는 일정기간의 수익, 비용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특히 프로그램별 원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합니다.
- 주석은 재정상태표 등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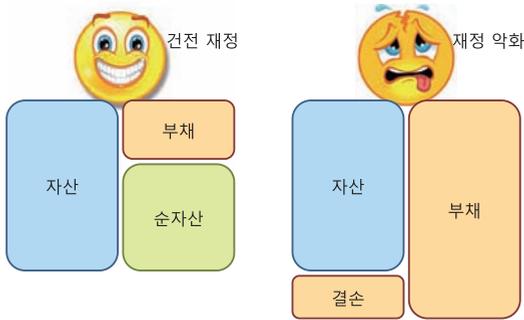
〈 그림 3-1 〉 재무제표의 종류 및 관계



2. 재정상태표란 무엇인가요?

- 재정상태표는 기업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또는 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를 말합니다.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결산일 기준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총계와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통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산총액과 부채 및 순자산의 합계가 동일하게 됩니다.

〈 그림 3-2 〉 재정상태표를 통한 재정상태 파악



3. 자산의 종류 및 작성기준은?

- 재정상태표 상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또한, 재정상태표 상 자산의 작성기준은 유동성 배열과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으로, 유동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12개월 후에 회수 또는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구분 표시되므로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산은 12개월 이내에 회수예정인 유동자산과 12개월을 초과하는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표 3-1 〉 재정상태표 상 자산의 종류 및 설명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4. 자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국가회계상 자산은 국가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①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현금화가 가능한 자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업무에 이용되는 자원) 경우, ②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①에 해당하는 경우만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②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도로, 공항, 항만 등)이 자산에 포함되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국가의 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 그림 3-3 〉 자산으로 기록되는 기준



5. 부채의 정의 및 종류는?

- 부채는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채무 뿐만 아니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도 부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국채 등과 같이 계약에 따라 금전적 지불의무가 있는 채무 뿐만 아니라 총당부채와 같은 국가잠재부채도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재정상태표 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총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부채의 작성기준도 유동성배열로 12개월 이내 지출 예상분과 12개월 초과 지출 예상분을 구분하여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국가의 부채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국·공채, 차입금, 미지급금 및 선수수익 등과 총당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는 금전적 지불의무가 있는 채무 뿐만 아니라 총당부채와 같은 국가잠재부채도 국가의 부채로 인식합니다.

〈 표 3-2 〉 재정상태표 상 부채의 종류 및 설명

부채의 종류	설 명
국·공채	국채는 국가에서 세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유가증권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며, 공채는 정부부처에서 필요에 의해 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차입금	금전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로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금으로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미지급금 및 선수수익 등	결산일(12월 31일) 현재 물품을 구입, 수령하고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이나 선수취한 수익금액인 선수수익 등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부채들을 말한다.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퇴직급여총당부채, 연금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및 기타장기총당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6. 순자산의 의미와 구분은?

- 재정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업회계의 경우 자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나, 기업에서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데 반해 국가회계의 순자산은 잔여재산 성격입니다.
- 따라서, 순자산이 부(負)의 금액이 되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며, 이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가회계에서 순자산은 부의 세대간 이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설립 시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적용이 되었다면 기본순자산은 최초연도 당시의 자산이 기록되었겠지만, 2009년 1월 1일부터 재무제표 작성이 시작되어 기본순자산은 2009년 1월 1일 기준 잔여재산이 됩니다. 다만, 기금과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하여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을 차감하고 순자산조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재산으로 국가회계에서 순자산은 부의 세대간 이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표 3-3 〉 순자산의 구분

구분	설 명
기본순자산	순자산에서 적립금및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적립금및잉여금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 결산시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결과가 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된다.
순자산조정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증감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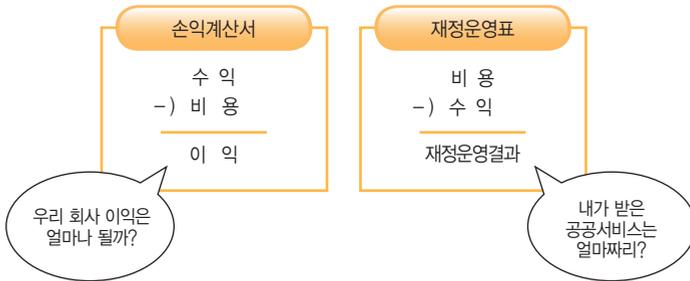
7. 재정운영표란 무엇이며, 작성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나라가 살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비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보여주는 구조이지만, 재정운영표는 반대로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재정운영결과를 보여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 이렇게 보고서의 구조가 정반대인 이유는 국가와 기업의 존재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산출되는가에 보고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된 순원가 즉, 재정운영결과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 손익계산서) 이익 측정 목적
(국가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산출 목적

〈 그림 3-4 〉 손익계산서와 재정운영표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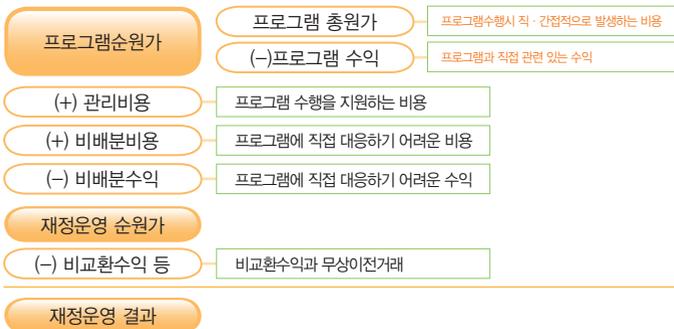
8. 재정운영표의 각 항목의 의미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양식입니다.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인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를 단순히 위아래를 바꾸어서 표시(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다고 혹평할 수 있지만, 국가는 재원을 조달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출하는데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양식을 개발한 결과입니다.
-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별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성과를 측정하여 과연 얼마의 원가로 얼마의 성과를 냈는지(성과보고서를 통해)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익을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접수혜자가 지불한 교환수익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납부한 비교환수익인지를 구분하여 직접수혜자와 일반납세자 부담분을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위가 정보제공 구조이면서, 직접수혜자와 일반납세자 부담분을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 그림 3-5 〉 재정운영표의 구조



9.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

-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합니다.
- 그런데 국가회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 무가 발생하여 수납하는 현금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나 벌과금 및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현금 등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현금 등을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회계는 재화(상품이나 제품 등)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교환수익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등을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에서는 수익을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그림 3-6 〉 교환거래 vs 비교환거래



10.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의 의의

-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분해 놓은 사업을 말합니다. 통상 프로그램은 각 부처의 국(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묶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로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교환수익과 비교 환수익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수혜자가 부담한 부분과 일반납세자가 부담한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 프로그램순원가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원가에서 프로그램수혜자가 납부한 수익을 차감한 후의 원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순원가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수혜자가 납부한 후 원가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이며, 이는 일반납세자의 부담분으로 보상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수혜자가 납부한 후 원가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이며, 이는 일반납세자의 부담분으로 보상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 그림 3-7 〉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의 의의

	X1년도	X2년도	
지년도에 500억원을 지출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육아시설을 건설한 경우			
세입·세출 결산	500억원 지출	육아시설 운영비 2억원 지출	취약계층 지원 축소
순원가 산출	-	감가상각비 10억 + 운영비 2억	취약계층 지원 배분(소비) 증가
성과지표와 연계	-	원가 12억 / 240,000명 이용	주변 육아시설과 성과비교 가능

(*) 위의 사례는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에서의 정보보다 순원가산출을 통한 정보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단위당원가 등을 비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순자산변동표란 무엇인가요?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한해 동안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기업회계에서 자본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즉, 전년도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을 순자산의 구성요소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별로 증가사유(오류수정이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당해연도의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그 외 조정항목들)를 가감하여 당해연도 말의 순자산 금액을 나타내는 명세입니다.
- 표 3-4를 보면, 적립금및잉여금의 변동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으로 인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에 따라 증감이 나타나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적립금및잉여금의 증감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표 3-4 〉 중앙관서의 순자산 변동표 구조

	기본 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국고수입, 비교환수익)		xxx		xxx
2. 재원의 이전(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xxx		xxx
IV. 조정항목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xxx	xxx	xxx	xxx

(*) 국가의 순자산변동표에는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내부거래제거 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 국가가 재정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내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 비교환수익의 수납 시 그 수익금액은 중앙관서가 아닌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에서 통합하여 관리되며, 이때의 국고금 이전거래를 순자산의 증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국고금(국가의 현금)의 상대회계처리 과목은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받는 쪽)과 국고이전지출(주는 쪽)입니다.
- 중앙관서간 재원의 조달거래를 수익으로 기록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순자산의 증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표 3-5 〉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요소

구분	설 명
기초순자산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으로 증대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이나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등을 반영하여 동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재원의조달및이전	재원의 조달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을 의미한다. 재원의 이전은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을 의미한다.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12. 주식과 필수보충정보

- 주식은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설명을 적은 것으로 재무제표의 일부분으로 간주합니다.
- 주식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리고 중요한 정보나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됩니다.
-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외에 주식사항의 예로는 부채의 상환계획,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과 지급보증 내역과 같은 약정사항, 소송사건과 같은 우발사항 등이 있습니다.
-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필수보충정보의 예로는 유산자산의 종류·수량 및 관리상태,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등이 있습니다.

〈 표 3-6 〉 필수보충정보의 주요 서류 설명

구분	설 명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일반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재무제표에서 설명하지 못한 사항들을 추가로 설명한다. 예 : 연금보고서의 연금총당부채 세부산출자료(혹은 장기재정추계) 등, 보험보고서의 보험총당부채 산출내역 등, 사회보험보고서의 사회보험부채 산출내역 및 준비금 등
국세징수활동표	국세징수활동표는 국가수입의 근간이 되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징수될 회수가능 세금(국세수익)에 대한 정보와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세금(국세수입)을 나타내는 명세서로서 국세 징수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다.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현금주의 예산결산의 산출물인 총잉여금(현금증감)과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산출물인 재정운영결과(이익)의 차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세서를 말한다.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제 4 장

주요계정과목 소개

1절 | 재정상태표

1. 유동자산

- 재정상태표 작성원칙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유동성 배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정상태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유동자산은 현금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자산의 분류기준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그림 4-1 〉 유동자산의 정의



-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하며, 국고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단기대여금은 앞에 ‘단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상태표일 이후 1년내’ 회수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금융상품, 투자증권, 대여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이후에 회수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장기’가 앞에 붙게 됩니다.

2. 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투자자산은 금융상품, 투자증권 등 투자 또는 권리 행사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 까지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그림 4-2 〉 투자자산의 정의



-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유동자산에 표시하고, 만기 1년 이상인 금융상품과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은 장기금융상품으로 투자자산에 표시합니다.

〈 표 4-1 〉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	설 명
정기예금	예금주가 일정기간 환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 교부하는 예금
정기적금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 받는 예금
기타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어음관리구좌(CMA),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등

- 투자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을 말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장기투자증권 등은 투자자산으로 1년 이내는 유동자산으로 표시합니다.

〈 표 4-2 〉 투자증권 종류

투자증권	설 명
채무증권	자금융용의 목적으로 취득한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지분증권	· 회사 또는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 우선주 등) ·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기타 투자증권	자금융용 또는 법령 및 정책적 목적이 아닌 국세 물납 등 기타사유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 당시는 만기가 2년이어서 투자자산으로 기록하였는데, 1년이 지나서 만기가 1년 이내인데 어떻게 하죠?



매 회계연도 말에 각 상품들에 대해서 만기를 다시 조사하여 1년 이내 현금화 될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바꿔 표시해 줍니다. 회계적 용어로는 '유동성 대체' 이구요. 부채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타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투자자산을 의미합니다.

〈 표 4-3 〉 기타투자자산 예시

기타투자자산	설 명
투자회원권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원권 (예: 골프회원권)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이란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 (예: 선물, 옵션, 스왑)
신탁사업수익권	부동산 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설정한 수익권

3.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 표 4-4 〉 일반유형자산 종류

일반유형자산	설 명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건물	청사, 관사, 출장소, 주택 등
구축물	교량, 궤도, 저수지, 정원설비 등
전비품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와 탄약 등
기계장치	배전반, 전동기, 변압기 등
집기·비품	책상, 의자, 컴퓨터, 가전제품 등
차량운반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원동기 등

- 일반유형자산의 종류를 보다 보면 전비품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회계 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3항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국가의 행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사 등 건물, 청사 등을 짓기 위한 토지 및 구축물, 집기와 비품, 차량운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무형자산이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무형자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형태는 없는 권리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표 4-5 〉 무형자산 종류

무형자산	설 명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내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프트웨어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 · 외부구입소프트웨어 :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
기타무형자산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서 국가의 행정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국가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고 국가에서 행정활동에 이용하는 자산

4. 사회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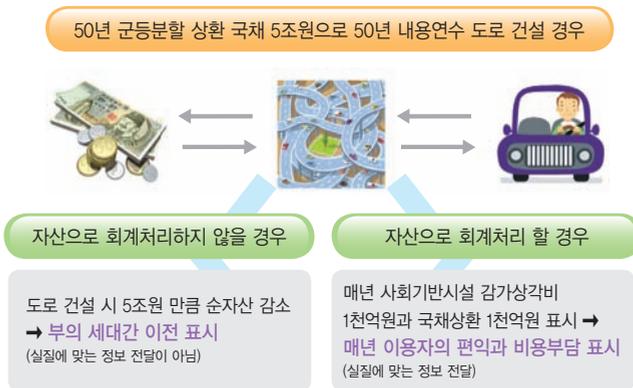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댐 등의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 표 4-6 〉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세부내역

사회기반시설 종류	세부내역	관련법령
도로	일반국도	도로법
철도	일반철도(광역철도포함) 고속철도	철도사업법
항만	지정항만	항만법
댐	다목적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공항	공항시설	공항법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도법
하천	국가하천	하천법
어항시설	국가어항	어촌어항법

- 사회기반시설은 발생주의 회계 도입 이전에는 어느 보고서에서도 금액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분류는 재무제표 방식과 다르지만 국유재산관리이용보고서, 물품관리이용보고서에서 금액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여 금액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의 금액보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은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자산이며(향후 매각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 도난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기타의 자산과는 달리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국가의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표시 되므로, 차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경우 대규모 투자 금액이 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차입금만 부채로 계상되므로 대규모의 부(負)의 순자산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그림 4-3 〉 재정상태표에 사회기반시설 표시 필요성



5. 유산자산

- 유산자산은 현 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말합니다.
- 유산자산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지며, 매각할 목적의 자산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금액으로 표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국가의 자산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그 종류 및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산자산은 현재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보1호인 남대문, 북한산 국립공원, 우포늪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표 4-7 〉 유산자산 세부내역 및 관련 법령

유산자산 종류	세부 내역	관련 법령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6. 부채란 무엇인가요?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종류별로 구분하면, 국·공채, 차입금, 미지급금 및 선수수익 등과 충당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경우와 같이 부채에서도 유동성 분류를 하게 되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확정부채는 유동부채로, 1년 후에 만기가 확정되는 확정부채는 장기차입부채로 표시합니다.
- 앞선 설명에서 '확정부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지출시기와 지출금액이 확실한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앞선 설명에서처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 국가에서는 부채와 채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채무는 계약 체결에 따라 지출시기 및 지출금액이 확정된 지출의무인 반면, 부채는 발생주의에 따른 미지급비용 등과 충당부채 등 향후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의무를 포함합니다.

〈 그림 4-4 〉 부채와 채무 비교



7. 총당부채(연금, 보험,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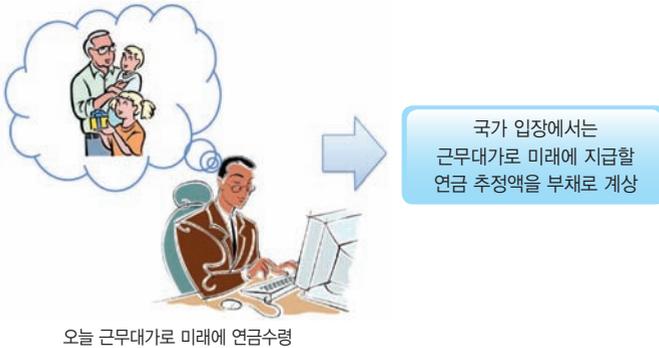
- 총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때 인식합니다.

(1) 연금총당부채

- 연금총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총당부채로서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연금총당부채 설정 대상입니다.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미래에 지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을 추정하여 총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 하지만, 미래에 받을 연금을 추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면, 입사 후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 어느 직급까지 승진을 할지, 급여상승률은 어떻게 될지 등의 요소에 의해 연금금액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금총당부채를 계상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정해 내야 하며 보통 과거 경험치를 기초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하여 총당부채를 산정해 내는 방법을 보험수리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기업에서 퇴직급여총당부채를 산정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 이 때, 미래에 추정되는 연금지급액 전부를 연금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할당된 금액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 지출가능성이 확실하

지 않아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11회계연도부터 필수보충정보의 연금보고서를 통해 향후 연금수입액과 연금지출액을 추정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 그림 4-5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연금충당부채 표시



(2) 보험충당부채

- 보험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무역보험기금 및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 그 대상입니다.
- 보험충당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과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즉, 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보험사건으로 인해 지출금액과 지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을 준비하여야 할 금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3) 보증충당부채

- 보증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 국가의 신용보증사업은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시 신용부족 등으로 차입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 보증충당부채는 약정 등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건으로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부담하게 될 추정금액을 현재가치로 인식하게 됩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함으로써 확정채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충당부채로는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8. 용자보조원가총당금

-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은 용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용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보조원가로 표시하면서 발생합니다.
- 여기서 시장이자율은 보통 국채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용자보조원가란 결국 국가가 조달한 국채의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하게 됨으로써 이자율 차이만큼의 비용이 국가에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러한 이자율 차이를 단순히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로 재정운영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차이금액을 '보조원가'로 보여줌으로써 보조금 성격의 재정지출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용자금의 대손충당금(받지 못할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경우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회수하지 못해서 민간에 보조금 지급 성격으로 보아 '보조원가'로 기록합니다.
- 이렇듯 국가의 운영현황에 맞게 분류와 표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업회계방식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용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며, 장기대여금의 차감 항목입니다.



02절 | 재정운영표

1.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비용의 종류

〈 그림 4-6 〉 재정운영표의 구조



-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를 통해 보고되는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먼저 프로그램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 단위인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를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비용이기에 ‘원가’라고 구분하고 재정운영표의 가장 첫 머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 관리운영비는 기업의 판매비·관리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정부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나 소모품비와 같은 행정운영경비가 여기 관리운영비로 구분됩니다.
- 마지막으로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낮아 프로그램원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들을 말합니다. 국가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처분 손실이 비배분비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은 프로그램원가처럼 매년 꾸준하게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 표 4-8 〉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종류 및 설명

비용의 종류	설 명
프로그램총원가	정책사업(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의 합계액
관리운영비	기관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비배분비용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

2.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수익의 종류

-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수익 항목은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과 비교환수익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프로그램수익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수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국가의 정책사업(프로그램) 중 하나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 그 다음 비배분수익은 앞서 설명한 비배분비용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이 낮아서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익들을 말합니다. 자산 처분이익, 평가이익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 마지막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비교환수익과 무상이전거래를 묶어서 보여주는 수익 항목입니다. 이 중 비교환수익은 앞서 얘기한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과 같이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걷어들인 수익 즉, 교환 없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 소득세와 같은 국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의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동일한 크기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무상이전거래란 중앙관서 간에 필요에 따라 재원을 이전하고 조달받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중앙관서가 B 중앙관서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A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의 무상이전거래 항목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 표 4-9 〉 재정운영표상 수익의 종류 및 설명

비용의 종류	설 명
프로그램수익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
비배분수익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
비교환수익	국가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3. 재정운영결과의 의미

- 재정운영표의 가장 아래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국가가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운영한 결과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즉, 재정운영결과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크기와 국민으로부터 국세나 부담금 등의 방식으로 거두어들인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지난 1년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수치인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정운영결과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가장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당기순이익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당기순이익의 경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업이 한 해 동안 적은 비용을 들여 큰 수익을 올렸으니 기업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우 재정운영표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충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정운영표에서는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재정운영결과보다는 개별사업의 손익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재정운영결과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운영결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 운영을 잘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의할 점은 재정운영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표시방법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재정운영결과가 부(-)의 수치가 되며, 당기순손실인 경우에는 정(+)의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4. 재정운영결과와 세계잉여금¹⁾은 어떻게 다른가?

- 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稅收額)을 초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가의 살림살이 운영에 따라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본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설명하였음.

- 그렇다면 재정운영결과와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재정운영결과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표시해 주는 숫자이고, 세계잉여금은 현금주의 회계에서 현금이 남았는지 부족한지를 표시해 주는 숫자입니다.

〈 그림 4-7 〉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해 국가 살림살이 결과 세계잉여금이 30조원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는 현금 수입액이 현금 지출액보다 30조원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계잉여금 30조원이 발생했다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금이 남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현금이 남은 원인 중에 국채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으로 현금이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실 점은 세계잉여금은 한해 살림살이 결과 현금이 남았다는 의미이지 회계에서의 이익 개념은 아닙니다. 기업의 현금흐름표의 현금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재정운영결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정운영결과는 얼마를 건어 들어서 얼마나 써서 없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정운영결과가 정(+)의 수치라면 건어 들인 것 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은 써서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지출을 통해 건물을 건설했다면 현금엔 지출되었지만 현금 지출로 건물이라는 자산이 생겼으

므로 써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현금이 지출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운영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사용해서 없어진게 아니므로).

〈 그림 4-8 〉 현금지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03절 |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의 평가기준(원칙)

-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합니다. 즉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취득이후에 그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 그림 4-9 〉 취득원가보다 장부가액이 낮게 조정되는 경우



물리적 손상 또는 가치하락

장부가액 감소

- 이러한 경우에, 시장가치의 하락에 따른 감액만 있고, 시장가치의 상승에 따른 재무제표에 가치 증가 표시의 건은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증가 표시될 수 있는 예로는 투자목적의 투자증권의 경우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하는 경우로서,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증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재정상태표에 기록 시 취득원가를 기초로 기록한 후에는 재평가 등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상태표가 공정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는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때 공정가액이란 일종의 시가(市價)를 의미합니다.

〈 그림 4-10 〉 시가로 평가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 따라서, 투자목적이 아니거나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시세차익의 목적보다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 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업무 자체도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에서입니다.

〈 표 4-10 〉 유가증권의 최초 취득시 평가

유가증권의 종류	평가 방법
채무증권	상각후취득원가로 ²⁾ 평가
지분증권	취득원가
기타투자증권	취득원가



취득 후 평가 시 유가증권이 투자목적이며,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상각후취득원가란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이다. 할인 또는 할증차금은 최초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채무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3. 미수채권 등의 평가

-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 대손이란 상대가 잠적 혹은 파산 등으로 국가가 받을 것을 못 받게 되는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산액을 말합니다. 미래 받지 못할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미수채권 등에서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표시되므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게 됩니다.

〈 그림 4-11 〉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미수채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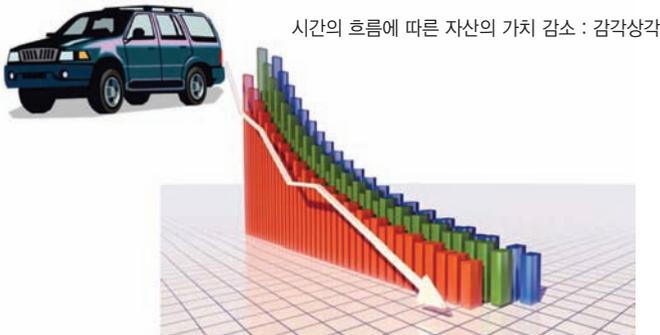
4.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 일반유형자산은 해당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이때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합니다.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사용가능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며,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대체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그림 4-12 〉 감가상각



5.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준용하여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 요소별로 감가상각 하되,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른 일반유형자산과는 달리 사회기반시설은 지속적인 수선유지를 통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하지 않고 수선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입니다.
- 예컨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일정기간 후 포장을 다시하여 영구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림 4-13 〉 용역잠재력이 유지되는 경우(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리고 철도의 경우, 철도와 관련된 수선유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특징과 감가상각의 목적이 회계적으로 비용의 배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6.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재평가를 수행하고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상각후대체원가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상각후대체원가란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경우 투입될 최적의 건설원가액(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 방법을 말합니다.

〈 그림 4-14 〉 상각후 대체원가법을 사용한 재평가



7. 부채의 평가기준

-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割引)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割引)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뺍니다.

〈 그림 4-15 〉 국채 할인 발행 시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합니다.

-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아 연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가 장래 받게 될 연금추정액을 산정한 후 재정상태표일 기간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상태표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복무중인 군인의 경우 개인별 또는 그룹별 예상퇴직시점과 장래 추정보수를 반영하여 관련 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산식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 후 예상 퇴직시점별로 산출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해 재직(복무)기간비율 또는 재직(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하여 평가합니다.
-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금'이라는 미래의 의무에 대한 평가금액이 아닌 '현재까지의 근무를 통하여 권리가 생긴 연금 급여분'인 현재의 의무에 대하여 미래상황을 고려한 평가금액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림 4-16 〉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장래 현금유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을 및 예상손실을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봅니다.

-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용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차액은 실질적으로 해당 용자사업을 통해 국가실체가 보조해주는 이자비용의 현재가치 금액이 될 것입니다.
- 보험충당부채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확정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됩니다.

8.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기준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합니다.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즉 일정화폐액(예를 들어 100달러)으로 고정되어 있어 환율의 등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재정상태표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표 4-11 〉 화폐성 vs 비화폐성

구분	평가 방법
화폐성 항목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현금 및 대부분의 채권/채무
비화폐성 항목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부채.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환율 변동에 관계 없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비화폐성으로 분류(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금)

9.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리스에는 간단히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 한마디로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한 후 그 리스자산에 대하여 싸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 등은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리스 시작할 때부터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³⁾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금융리스계약인 경우 리스자산으로 계상된 자산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분류되는 해당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리스부채 역시 부채의 상환금액과 이자비용의 현재가치로 매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내재이자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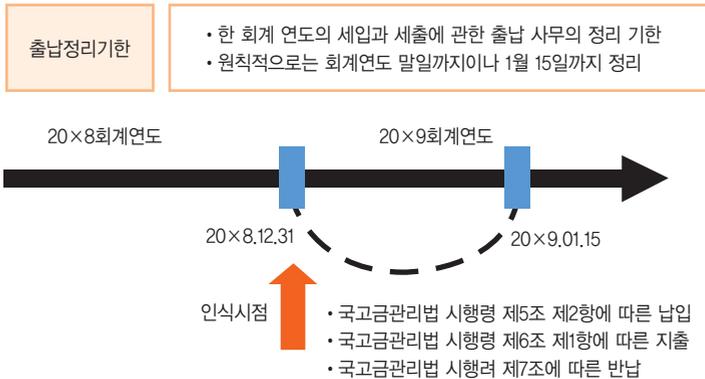
제 5 장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1. 출납정리기한

- 국가의 예산에 따른 현금의 지출과 수입은 지출 및 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각각 올해의 예산은 올해에 모두 수납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출납정리기한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수납 및 지출에 대하여 허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출납정리기한의 예로는 경비를 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 카드대금 지급을 위한 것과 지방세 등의 징수에 의한 수입금 등이 존재합니다. 이 출납기한동안 납입 및 지출한 금액은 비록 다음해 1월에 들어오거나 사용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1년 단위로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기 때문에 국가회계에서는 올해 말에 수입 및 지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처리를 실시합니다.

〈 그림 5-1 〉 출납정리기한



2.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 국가는 도로, 학교, 병원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등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운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의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방식도 건설되는 시설에 따라 BTO, BT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사용료 징수 등 운영(Operate)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대해서 채택하는 민간투자 방법입니다.

〈 그림 5-2 〉 수익형 민자사업(B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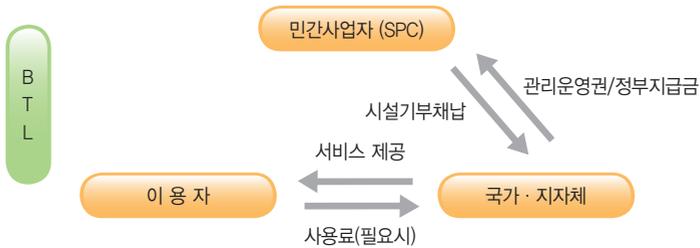


- BTO방식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 준공 후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자산을 넘기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의 차감계정인 사용수익권으로 계상합니다. 사용수익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합니다.

(2)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정부가 시설임대료(Lease)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림 5-3 〉 임대형민자사업(BTL)



- BTL 방식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아 할부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 지급액의 총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임대료 지급액의 총액과 민간투자비와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합니다.

3.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 출연금이란, 국가가 재정사업 등을 비영리기관에 위탁한 경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적 재산을 의미합니다.
- 그 중 기금이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령하는 출연금은 기금설치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 순자산증감 항목으로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때, 재원의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의 경우, 출연금과는 달리 기금의 수행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담시키는 의무로써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표 5-1 〉 기금의 경우 출연금 회계처리 구분

구분	설 명
출연금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총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예) 사업비용 총당, 관리비 및 운영비에 총당 등
출연금을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예) 시설 신설 및 증설 등 자본적지출, 자산 매입, 용자금/신용보증/채무보증의 재원, 차입금 상환의 재원

4.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 국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외에 재무결산서로 부속서류인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가 존재합니다. 먼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과 관련하여 세부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회계과목의 세부적인 금액과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재무결산서의 필수보충정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유산자산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에 계상되지 않는 유산자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무결산서의 필수보충정보로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수보충정보의 주 작성주체에는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이 있습니다.

(2) 국세징수활동표

- 국가의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국세징수활동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해당 세입을 부처의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재정운영표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와 관련된 국세수익금액과 국세수입금액(현금수납액)의 회계처리를

별도의 보고서에 모으는 처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활동표가 만들어집니다. 국세징수활동표에는 당기의 국세수익금액과 국세수입금액이 나타나게 되며 국세관련 채권에 따른 대손상각비 등 국세관련 모든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 작성 주체에 해당되는 세 부처(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국세징수활동표의 금액은 뒤에 설명할 국가통합 과정에서 다시 합쳐져 적절한 회계처리를 거쳐 국가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3) 수익 · 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별로 원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각 프로그램별 원가를 산출함으로써 특정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양식입니다.
- 하지만 해당 양식은 프로그램원가의 비용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원가가 1억원인 경우 해당 사업에 1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1억원이 인건비인지, 용역비인지 혹은 수수료인지는 알 수 없는 양식입니다.
- 따라서 수익 · 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작성함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에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용역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용별 비중을 파악하거나, 프로그램총원가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인건비 간의 비교 · 파악을 통하여 효율성 또는 정부부처의 사업수행성과의 기본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4)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인식기준 차이에 따라 예산회계결산상의 세입세출의 차액인 총잉여금과 재무제표상 비용과 수익의 차이인 재정운영결과과는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실체의 성과평가 지표 중 하나인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차이항목으로는 크게 '자산·부채의 증감',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와 '순자산변동'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예산회계 결산의 결과치인 총잉여금과 재무회계 결산의 결과치인 재정운영결과 간의 차이 금액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보고서 등

- 이 외에도 국가회계에서 요구하는 필수보충정보로는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및 사회보험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국가의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의 편익과 연관성이 높은 연금과 보험 및 사회보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국가통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제거

(1) 통합재무제표 작성의 의의

-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국회, 정책결정자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주체인 각 회계 및 기금 단위뿐만 아니라 중앙관서별, 혹은 국가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제거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내부거래제거란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보고실체의 재무제표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고 각 보고주체별(중앙관서, 국가)로 보다 정확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를 보여주는 회계처리입니다.
-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정부출연금 10억원을 기금에 지출한 경우 기금은 수익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통합과정에서 내부의 회계실체간 손익거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이 중복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거래제거에는 위에서 예를 든 수익·비용간 내부거래 외에 재원의 조달·이전 내부거래와 자산·부채의 내부거래 등이 있습니다.

(2)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재무제표

- 우리나라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의 행정활동 등을 위한 50개의 중앙부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서 별로 일반회계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0개의 회계와 기금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를 모두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한 후 중앙관서의 통합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거래제거를 통하여 상호 발생한 채권·채무, 수익·비용 및 재원의 조달·이전을 제거합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국세징수활동표와 국고금회계의 금액도 통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를 알려주는 국가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별 첨

재무제표 서식

[재정상태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00기금, 00부처, 대한민국 정부

(단위 :)

	20XY	20XX
● 자산		
I. 유동자산	<u>XXX</u>	<u>XXX</u>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XXX
2. 단기금융상품	XXX	XXX
3. 단기투자증권	XXX	XXX
4. 미수채권	XXX	XXX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XXX	XXX
미수채권대손충당금	<u>XXX</u>	<u>XXX</u>
5. 단기대여금	XXX	XXX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u>XXX</u>	<u>XXX</u>
6. 기타 유동자산	XXX	XXX
II. 투자자산	<u>XXX</u>	<u>XXX</u>
1. 장기금융상품	XXX	XXX
2. 장기투자증권	XXX	XXX
3. 장기대여금	XXX	XXX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u>XXX</u>	<u>XXX</u>
4. 기타 투자자산	XXX	XXX
III. 일반유형자산	<u>XXX</u>	<u>XXX</u>
1. 토지	XXX	XXX
토지사용수익권	<u>XXX</u>	<u>XXX</u>
2. 건물	XXX	XXX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건물사용수익권	XXX	XXX

3.	건축물	XXX		XXX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건축물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4.	기계장치	XXX		XXX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기계장치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XXX		XXX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집기·비품·차량운반구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6.	전비품	XXX		XXX	
	전비품감가상각누계액	<u>XXX</u>	XXX	<u>XXX</u>	XXX
7.	기타 일반유형자산	XXX		XXX	
	기타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기타 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8.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XXX		XXX

IV. 사회기반시설

			XXX		XXX
1.	도로	XXX		XXX	
	도로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도로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2.	철도	XXX		XXX	
	철도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철도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3.	항만	XXX		XXX	
	항만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항만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4.	댐	XXX		XXX	
	댐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댐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5.	공항	XXX		XXX	
	공항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공항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6.	기타 사회기반시설	XXX		XXX	
	기타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기타 사회기반시설사용수익권	<u>XXX</u>	XXX	<u>XXX</u>	XXX
7.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XXX		XXX

V. 무형자산		<u>XXX</u>	<u>XXX</u>
1.	산업재산권	XXX	XXX
2.	광업권	XXX	XXX
3.	소프트웨어	XXX	XXX
4.	기타 무형자산	XXX	XXX
VI. 기타 비유동자산		<u>XXX</u>	<u>XXX</u>
1.	장기미수채권	XXX	XXX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XXX	XXX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u>XXX</u>	<u>XXX</u>
2.	기타의 기타 비유동자산	XXX	XXX
자산 계		<u>XXX</u>	<u>XXX</u>
● 부채			
I. 유동부채		<u>XXX</u>	<u>XXX</u>
1.	단기국채	XXX	XXX
	단기국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단기자기국채	<u>XXX</u>	<u>XXX</u>
2.	단기공채	XXX	XXX
	단기공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단기자기공채	<u>XXX</u>	<u>XXX</u>
3.	단기차입금	XXX	XXX
4.	유동성장기차입부채	XXX	XXX
5.	기타 유동부채	XXX	XXX
	기타 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u>XXX</u>	<u>XXX</u>
II. 장기차입부채		<u>XXX</u>	<u>XXX</u>
1.	국채	XXX	XXX
	국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자기국채	<u>XXX</u>	<u>XXX</u>
2.	공채	XXX	XXX
	공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자기공채	<u>XXX</u>	<u>XXX</u>
3.	장기차입금	XXX	XXX
4.	기타 장기차입부채	XXX	XXX

III. 장기충당부채		<u>XXX</u>	<u>XXX</u>
1.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2. 연금충당부채		XXX	XXX
3. 보험충당부채		XXX	XXX
4. 기타 장기충당부채		XXX	XXX

IV. 기타 비유동부채		<u>XXX</u>	<u>XXX</u>
1. 장기미지급금	XXX		XXX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u>XXX</u>	XXX	<u>XXX</u>
2. 기타의 기타 비유동부채		XXX	XXX

부채 계		<u>XXX</u>	<u>XXX</u>
-------------	--	------------	------------

● 순자산

I. 기본순자산		XXX	XXX
II. 적립금 및 잉여금		XXX	XXX
III.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 계		<u>XXX</u>	<u>XXX</u>
부채외순자산 계		<u>XXX</u>	<u>XXX</u>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

	<u>20XY</u>	<u>20XX</u>
I. 재정운영순원가	XXX	XXX
1. 대통령실	XXX	XXX
2. 행정안전부	XXX	XXX
3. 기획재정부	XXX	XXX
4. ...		
I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국세수익		
(1) 국세수익	XXX	XXX
(2) 대손상각비	XXX	XXX
(3) 대손충당금환입	<u>XXX</u>	<u>XXX</u>
2. 부담금수익	XXX	XXX
3. 제재금수익	XXX	XXX
4. 사회보험수익	XXX	XXX
5. 채무면제이익	XXX	XXX
6.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XXX	XXX
III. 재정운영결과(I - II)	<u>XXX</u>	<u>XXX</u>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XXX	XXX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u>XXX</u>	<u>XXX</u>	<u>XXX</u>	<u>XXX</u>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00기금, 00부처

(단위:)

	총원가	20XY		총원가	20XX	
		수익	순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XXX	(XXX)	XXX	XXX	(XXX)	XXX
1. 프로그램(A)	XXX	(XXX)	XXX	XXX	(XXX)	XXX
2. 프로그램(B)	XXX	(XXX)	XXX	XXX	(XXX)	XXX
3. 프로그램(C)	XXX	(XXX)	XXX	XXX	(XXX)	XXX
4. 프로그램(D)	XXX	(XXX)	XXX	XXX	(XXX)	XXX
5. ...						
II. 관리운영비			XXX			XXX
1. 인건비			XXX			XXX
2. 경비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XX			XXX
1. 자산처분손실			XXX			XXX
2. 기타비용			XXX			XXX
3.			XXX			XXX
IV. 비배분수익			XXX			XXX
1. 자산처분이익			XXX			XXX
2. 기타수익			XXX			XXX
3.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부담금수익			XXX			XXX
2. 제재금수익			XXX			XXX
3. 사회보험수익			XXX			XXX
4. 채무면제이익			XXX			XXX
5.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6. 기타자원조달및이전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XXX			XXX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000금, 00부처

(단위:)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부담금수익		XXX		XXX
(3) 제재금수익		XXX		XXX
(4)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5) 무상이전수입		XXX		XXX
(6) 채무면제이익		XXX		XXX
(7) 기타재원조달		XXX		XXX
2. 재원이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무상이전지출		XXX		XXX
(3) 기타재원이전		XXX		XXX
IV.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XXX	XXX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u>XXX</u>	<u>XXX</u>	<u>XXX</u>	<u>XXX</u>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2판1쇄 _ 2011년 11월 25일

발 행 _ 2011년 9월

발행인 _ 편호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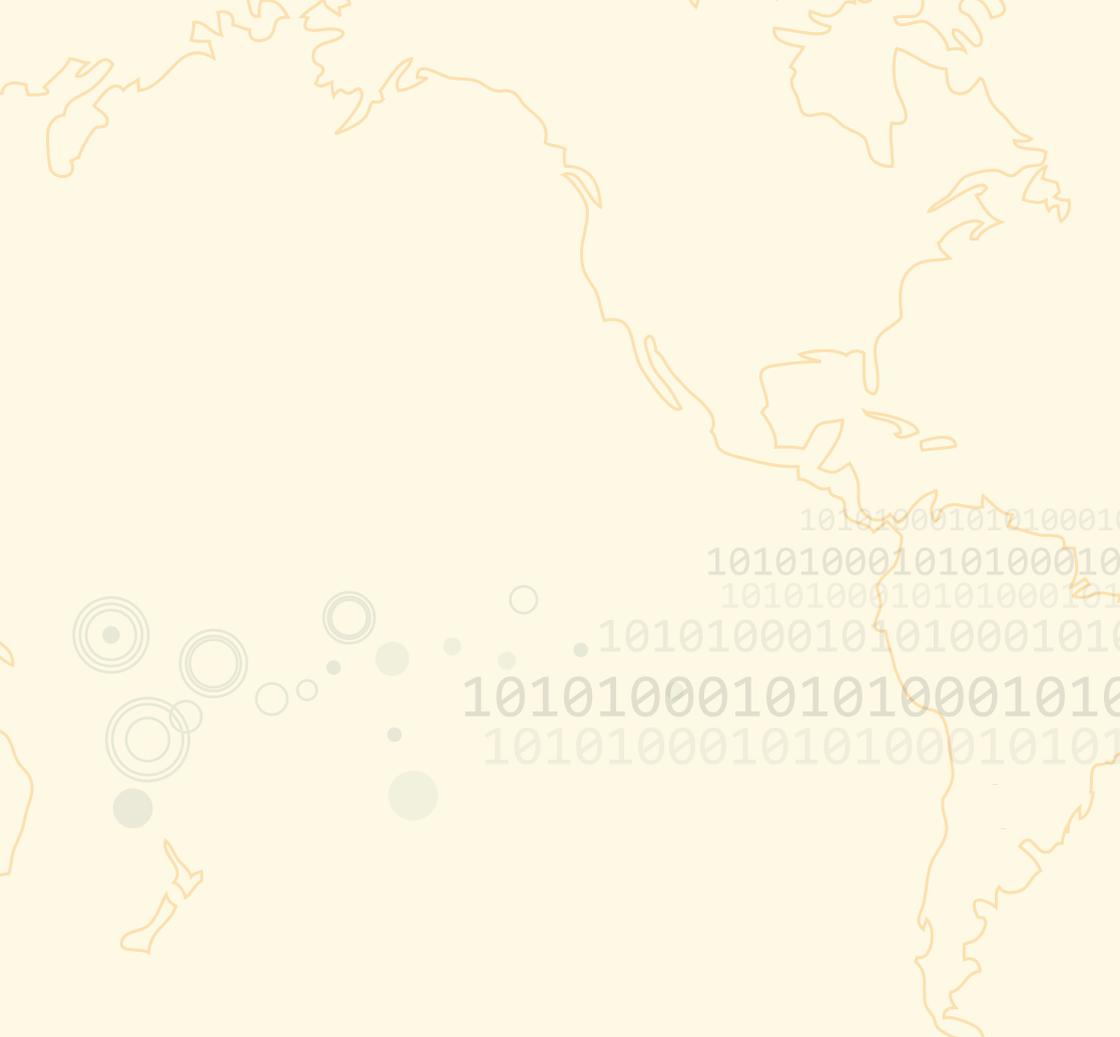
발행처 _ 국가회계기준센터

집필참여자 _ 편호범, 김상노, 윤정원, 김은영, 현지용, 한소영, 박보희, 배재철, 정지웅,
윤송이, 임정혁, 윤성호, 유동훈, 김세화, 권기환, 최지영, 진태호, 오미경

주 소 _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 02.3149.7560 Fax 02.3149.7570 Homepage www.nasc.or.kr

디자인·제작 _ 원화 D&P _ 02-2266-4410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회계기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제정·공표된 국가회계기준, 준칙 및 지침(이하 “국가회계기준”) 등 각종 발간물의 게재를 통해 국내 모든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게재된 국가회계기준과 각종 발간물을 서적 출판이나 기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와 별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